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이 지난 3월 17일 제183회 임시국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그간 통상산업부가 내무부·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월 27일 제23회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통과하였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대통령 재가 등 관련절차를 거쳐 6월초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무고용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영업에 대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서 개정법률에 따라 기업이 사업장의 주된 영업분야 또는 가스·전기 등 중요한 영업보조분야에 해당하는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의무고용자를 채용하는 경우, 이들이 산업안전관리자 등 다른 분야의 의무고용자 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를 위한 사업장의 “주된 영업분야 등”에 대한 기준과 2 이상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이 공동으로 채용된 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정하였고 한편 산업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방화관리자 의무고용 인원의 축소·조정 등이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편 집 부>

## 1. 의무고용자간 상호겸직 허용범위 확대

(개정)

### (1) 안전관리자 등의 겸직이 허용되는 “주된 영업분야 등”의 기준(제12조 제3항 내지 제6항)

(현행)

- 종전에는 기업이 사업장의 주된 영업분야에서 필요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거나 주된 영업분야는 아니더라도 중요한 영업보조분야(전기·보일러 등)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채용하여도
- 각 개별법령에 의한 산업안전관리자 등 다른 분야의 안전관리자도 모두 채용하여야 함으로써 기업의 의무고용 부담이 과중하였음.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 의무고용자간에 상호 겸직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어
- 기업이 사업장의 주된 영업분야 또는 중요한 영업보조분야에서 필요한 방화관리자·위험물안전관리자·전기안전관리담당자 등 한 분야의 의무고용자를 채용하면, 이들이 산업안전관리자 등 다른 분야 의무고용자의 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의 의무고용 부담이 줄어들게 됨.
- 따라서 상호 겸직 허용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의 “주된 영업분야”를 사업장에서 매출액이 가장 많은 분야로서 그 매출액이 당해 사업장 총매출액의 50% 이상(영업분야가 4 이상인 경우는 40% 이상)을 차지하는 분야로 시행령에서 정함.

## (2) 환경관리인과 보건관리자간의 상호 겸직 기준(제12조 제7항)

(현행)

- 종전에는 무연탄 환산 연료사용량이 연간 1,000톤 이상인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96년말 현재 3,326개 사업체)과 1일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96년말 현재 1,576개 사업체)은 각각 대기 및 수질환경관리인 1인 이상을 의무고용하여야 하고
- 3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 1-3인을 의무고용하여야 함.
  - 대부분의 제조업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개별법상 기준에 의해 대기,수질환경관리인과 보건관리자를 각각 고용함으로써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왔음.

(개정)

- 이에 따라 지난 3월 개정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대기환경관리인,수질환경관리인 및 보건관리자간 상호 겸직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였으며
- 시행령에서 대기,수질환경관리인간 또는 대기환경관리인,보건관리자간 상호 겸직이 허용되는 기준을 해당 분야의 복수자격 보유자를 채용한 경우로 정함.

## 2. 의무고용자의 공동채용 허용범위 확대(제15조)

- 종전에 환경관리인에 한해 허용되던 공동채용제도가 지난 3월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해, 위험물안전관리자,방화관리자,유독물관리자,검사대상기기조종자,전기안전관리담당자 및 산업안전관리자의 분야에도 확대,적용되게 됨으로써
- 앞으로 이러한 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 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시 1인의 의무고용자가 여러 사업장을 관리하게 됨으로써 업무수행을 소홀히 할 우려와 더불어, 공동으로 채용된 자와 사업자간의 권리 및 책임관계가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시행령에서 공동으로 채용된 자에 대한 근무시간, 근무일지의 작성,비치 등의 관리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채용으로 인한 기업의 안전관리 등에 문제가 없

도록 공동채용제도의 내실화를 기함.

## 3. 산업안전관리자 등의 의무고용 면제범위 확대(부칙 제2조)

(현행)

- 종전에는 3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의 영업분야에 필요한 가스전기,유독물 등 특정분야의 안전관리자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산업안전관리자 1-4인 및 보건관리자 1-3인을 의무고용하여야 하고
- 대형 사업장에는 의사자격을 가진 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
- 또한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특수장소 또는 가연성가스를 5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등 1급 방화관리대상물에는 방화관리자를 의무고용하여야 함.
  - 방화관리자는 당해 장소의 소방계획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일반적인 소방안전관리를 담당

(개정)

- 따라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일반적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방화관리자에 대한 의무고용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 산업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50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부터 의무고용하되, 최대 2인까지만 두도록 하고
  - 대형 사업장의 경우, 의사 대신 간호사자격을 가진 보건관리자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도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특수장소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등으로 그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기업의 의무고용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음.

### <참 고>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주요 의무고용제도 개선내용

#### 1. 기업에 의한 자율고용제도로 전환 (법 제 28조)

- 자율고용으로 전환되는 분야(13종)

- 완전 자율고용으로 전환(10종)
  - 식품위생관리인, 세척제위생관리인, 산업보건의, 품질관리담당자, 계량기사, 에너지관리자, 안전운전관리자, 집단에너지안전관리자, 소음·진동환경관리인, 위험물시설안전원
- 부분자율고용으로 전환(3종)
  - 액화가스안전관리자(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원), 교통안전관리자(선박·항만하역 등), 광산보안관리직원(부보안전관리자)

## 2.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범위 확대(법 제29조-제31조)

○의무고용자간의 상호겸직 범위를 확대하여, 어느 한 분야의 의무고용자를 채용하는 경우 다른 분야의 의무고용자를 채용한 것으로 간주

예) 고압가스를 제조하는 A사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관리자, 소방법에 의한 방화관리자 등을 각각 채용하여야 하는 경우라도 고압가스안전관리자 하나만 채용하면 나머지 자의 채용을 면제

○고압가스안전관리자·산업안전관리자·전기안전관리담당자 등 9종에 대해서 겸직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수질환경관리인 등 5종에 대해서는 신설

## 3. 공동채용 허용범위 확대(법 제32조-제39조)

○산업단지 등 공장밀집지역내에 소재한 3-5개의 사업장이 공동으로 의무고용자를 채용

○수질·대기환경관리인에 대해서 공동채용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산업안전관리자·전기안전관리자 등 6종에 대해서는 신설

### 『실무환경』 투고(投稿) 안내

“환경보전”지는 환경관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환경업무에 종사하는 실무자 여러분에게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실무환경』란을 신설하였습니다.

독자 여러분들과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기술 및 사례, 그밖에 관련내용들로 집필하여 적극적인 투고(投稿)를 바랍니다.

특히 환경관리 및 방지시설에 있어서 현장(사업장 등)에서 꼭 필요한 기술 및 성공사례, 친화기업 지정사례(ISO-9000, 14000인증 획득 사례) 등으로 동종의 업종에서 종사하는 환경관련인들과의 정보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 아 래 —

- ◆ 제 목 : 제한없음
- ◆ 분 량 : 워드 80컬럼×24줄 6매 내외(200자원고지 45매)
- ◆ 마 감 : 매달 20일
- ◆ 참 고 :
  - 원고는 원본과 플로피 디스켓 저장본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컴퓨터 통신 e-mail를 통해 보내주실 경우,
    - ◁ ID : 하이텔 - KEPA, 천리안 - DKEPA
    - ◁ Internet e-mail : KEPA@hitel.kol.co.kr
  - 원고와 관련된 참고사진과 집필자의 사진, 약력,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원과와 함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 보내주실 곳

(130-035)서울 동대문구 답십리 5동 497-66 서울상공회의소 동부지소빌딩 환경보전협회 홍보부  
Tel : 02-216-3882, 02-249-5265/6 Fax : 02-249-5267

\*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와 “환경보전”지를 보내 드립니다.